

6.3 지방선거 전 입영청년 투표권 보장과 공직후보자 병적증명서 발급 지원

- 5월 18~28일 입영자, 5월 16일까지 '선거공보 신청' 후 부대 인근에서 사전투표
- 6월 1~2일 입영자, 5월 29~30일 중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후 입영
- 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는 '정부24' 온라인 신청 또는 지방병무청·주민센터 방문

병무청(청장 홍소영)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, 5월 18일부터 6월 2일 중 입영하는 청년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입영일자별 맞춤 안내를 실시한다.

지방선거 전 입영청년 1만3천 명에게 투표권 행사 안내

이번 안내는 6월 3일 지방선거일에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일 직전 입영예정자 약 1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.

먼저, 5월 18일부터 28일 사이에 입영하는 청년들은 입영 후 부대 인근에서 사전투표 할 수 있다. 병무청은 이들에게 입영하기 전에 '선거공보 발송 신청'을 하도록 안내해 입영부대에서 후보자의 정책을 확인한 뒤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 선거공보 신청기간은 5월 12일~16일이며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'선거공보 발송 신청' 메뉴에서 본인이 입영할 부대의 사서함 주소 등을 정확히 입력하면 된다.

다음으로, 선거일 바로 직전인 6월 1일 또는 2일에 입영하는 청년들은 선거당일에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없다. 병무청은 이들에게 사전투표기간 중에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한 후 입영할 것을 권장한다. 사전투표일은 5월 29일~30일 18시까지이며, 별도의 신고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.

신속정확한 병적증명서 발급으로 공정선거 지원

병무청은 신속하고 정확한 병적증명서 발급을 통해 공정선거를 지원한다.

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5월 14일~15일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병역사항을 신고해야 한다.

신고 대상은 후보자 본인 및 18세 이상의 직계비속(남성)이며, 후보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혼인기간 중 배우자가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 등도 포함된다.

병역사항 신고 시에는 '공직자 등 신고용'으로 용도가 지정된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, 복무 중인 사람은 복무부대장이나 복무기관의 장이 발행한 복무확인서로 대체한다.

신고 대상 중 병역의무 이행 전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사항 신고 기준일인 4월 14일 기준으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,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사람 중 이미 공직자 등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기간에 다시 발급받지 않고 종전 증명서를 제출해도 된다.

병적증명서는 '정부 24'로 신청하거나, 지방병무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.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며, 가족의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서류, 대리인의 경우 위임한 사람과 대리인의 신분증, 그리고 위임장이 필요하다. 발급기간은 담당 직원의 병역사항 확인 절차가 필요하여 최대 1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후보자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발급 받을 것을 권장한다.

홍소영 병무청장은 "병무청은 입영 청년의 투표권 보장을 적극 지원하고, 신속·정확하게 병적증명서를 발급하여 국민이 후보자의 병역사항을 정확히 확인·검증할 수 있도록 공정선거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" 라고 밝혔다. 끝.

담당 부서	사회복무국 사회복무정책과	책임자	과 장	송민선 (042-481-3002)
		담당자	사무관	박영선 (042-481-3005)
담당 부서	사회복무국 병역공개과	책임자	과 장	강정순 (042-481-2723)
		담당자	사무관	나운선 (042-481-2777)

【참고자료】

□ 선거 전 입영(소집) 안내 대상

구분 (기간)	선거공보 발송신청 (5. 12. ~ 5. 16.)	사전투표 (5. 29. ~ 5. 30.)
대상자 (입영일)	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('08. 6. 4. 출생자 까지 포함) 입영(소집) 대상	
	사전투표일 이전 (5. 18. ~ 5. 28.) 입영(소집)대상자	선거일 직전 (6. 1. ~ 6. 2.) 입영(소집)대상자

□ 선거후보자 등록 일정

일정	실시사항
'26. 2. 3.부터	예비후보자등록 신청[시·도지사 및 교육감선거]
'26. 2. 20.부터	예비후보자등록 신청[시·도의원, 구·시의원 및 장의 선거]
'26. 3. 22.부터	예비후보자등록 신청[군의원 및 장의 선거]
'26. 5. 14 ~ 15.	후보자등록 신청(매일 오전 9시 ~ 오후 6시)
'26. 6. 3.	투표 및 개표

* 병역사항 신고기준일 : 후보자등록일 1개월 전 (4. 14.)

□ 공직자 등 신고용 병적증명서 발급 대상

- 관련근거 : 병역공개법 제3조(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)
- 발급 대상 : 신고의무자(본인) + 본인의 직계비속 + 본인의 배우자*
 - 본인(신고의무자) : 남성, 여성 모두 해당
 - 본인의 직계비속 : 18세 이상의 남성만 해당
 - 본인의 배우자 : 본인이 여성인 경우에 남성 배우자 해당

* 배우자 :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해당

□ 병적증명서 신청·발급 방법 및 구비서류

유 형	신청방법	발급방법	구비서류
온라인	정부24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	· 본인 출력	· 본인 외 신청 불가
오프라인	방문 지방병무청, 재외공관 방문	· 대면 교부	· 본인 신청 : 신분증 · 가족(직계 존·비속,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) 신청 : 신분증, 가족관계서류 · 대리인 신청 : 위임장, 위임한 사람과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신분증
	FAX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	· 대면 교부	